성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년 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8423호 전면개정 2007. 05. 11.)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성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에 개정 된 상위법의 법 조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띄어쓰기

-「성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」를「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로 함

나. 조례·규칙 등의 공포방법에 대한 상위법 개정 조항을 반영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「지방자치법」제26조(발췌 별첨)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다. 기타

1) 개정조례안 : 붙임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3) 입법예고 : 생략(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「성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」”를 “「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7조 제1항중 “법 제19조제6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제26조 제6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 명 「성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」	**제명**「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관한조례」
제7조(공포방법) ①자치법규 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·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**법 제19조제6항**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 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. ②**(생 략)**	**제7조(공포방법)** ①---------- ---------- **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6항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②**(현행과 같음)**